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http://www.namwon.go.kr)

제34호 2021. 8. 27(금)

<b>선 람</b>	기관의장

고 시
-----

○ 남원시 고시 제2021-135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1

공 고
-----

○ 남원시 공고 제2021-1703호 공시송달공고 ----- 2

○ 남원시 공고 제2021-1719호 남원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고시 제2021 - 135호

##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1년 08월 25일

남 원 시 장

1. 사 업 명 : 개간사업
2. 사업목적 :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소득증대 기여
3. 사 업 비 : 자력사업
4. 사업내용
  - 가. 위 치 : 남원시 덕과면 용산리 998-25
  - 나. 사 업 량 : 3,427m<sup>2</sup>
  - 다. 사업기간 : 2021. 08. ~ 2022. 07. 30.
  - 라. 사업시행자 : 남원시 덕\*면 덕\*로 5\*7-2\*6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농정과 농업시설(620-638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21 - 1703호

##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말소처리를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8. 30. ~ 2021. 9. 14. (15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시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3. 공시송달 내용

처분의 제목	소유자 현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성 명	주 소		위 치	건축물현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말소일 : 2021.8.24.)	강○대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357	건축물 부존재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357	주1 1층 목조/스레트 주택 36.26㎡ 주1 1층 블럭/기와 주택 16.6㎡ 부1 1층 블럭/기와 창고 8.13㎡ 부2 1층 블럭/기와 축사 11.31㎡

####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 (☎063-620-659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8. 30.

남 원 시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고 제2021-1719호

남원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7일

## 남 원 시 장

### 남원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 심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치매관리사업 지원 내용을 정비하고,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치매안심센터 이용 제한, 비밀누설의 금지 내용 등을 신설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명 변경(남원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나.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근거 마련(안 제3조)
- 다. 치매관리사업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구체화(안 제4조, 제5조)
- 라. 치매안심센터 이용 제한 근거 마련(감염병환자 등)(안 제8조)
- 마. 포상 근거 마련(안 제9조)
- 바. 비밀누설의 금지 근거 마련(안 제10조)

####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남원시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5766 / 전북 남원시 요천로 1285, 남원시보건소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7928), 직접방문, 컴퓨터 통신 (bank@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치매안심과 담당자 최용재(전화 : 063-620-799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남원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1. 8.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 1. 개정이유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치매안심센터 이용 제한, 비밀누설의 금지 내용 등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 심의사항 결과에 따라 치매관리사업 지원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명 변경(남원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나.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근거 마련(안 제3조)
- 다. 치매관리사업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구체화(안 제4조, 제5조)
- 라. 치매안심센터 이용 제한 근거 마련(감염병환자 등)(안 제8조)
- 마. 포상 근거 마련(안 제9조)
- 바. 비밀누설의 금지 근거 마련(안 제1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8. . ~ 2021. 9. .(20일간) \*초일불산입
    - 결 과 :
  -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 남원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의 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남원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4조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남원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 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6.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7. 그 밖의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환자 및 그 가족
2.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3. 치매관리사업 홍보, 캠페인, 교육 및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사람 및 자원봉사자와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단체

제5조(지원 내용)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사업,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검사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2. 치매환자의 치료에 따른 비용 중 본인부담금
3. 치매 전 단계의 인지강화 및 생활안전에 필요한 물품
4. 지역사회 치매예방, 인식개선 및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
5. 치매환자 건강관리 및 실종예방을 위한 물품
6.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비용
7.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비용

8.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교육 및 홍보 비용

9. 치매관리사업 홍보, 캠페인, 교육 및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대상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물품, 기념품, 상품권, 간식 등 구입 비용

10.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중 “치매치료비용”을 “치매관리사업 비용”으로, “지원금을 되돌려 받을”을 “비용을 환수할”로 한다.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8조(이용 제한) 시장은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센터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센터 이용에 따른 질서를 지키지 않은 치매환자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포상) 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념품, 상품권,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남원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u></p>	<p><u>남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남원시민의 치매 예방 관리와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의 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남원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u></p>
<p><u>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u></p>	
<p><u>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u></p>	

현행	개정안
<p>다.</p> <p>3. “<u>초로기 치매</u>”란 만 60세 미만 사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p> <p>4. “<u>치매 선별검사</u>”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 회상 등을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p> <p>5. “<u>치매 진단검사</u>”란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사람에게 치매 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전문의 진찰을 말한다.</p> <p>6. “<u>치매 감별검사</u>”란 치매진단검사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사람에게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p> <p>7. “<u>전문 의료기관</u>”이란 정신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p> <p>8. “<u>치매 치료</u>”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p>	

현행	개정안
<p><u>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u></p> <p>9. <u>“본인 부담금”이란 제8호의 해당 진료를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u></p> <p>제3조(지원 대상) ① <u>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시민</u></p> <p>2. <u>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초로기 치매환자 등)</u></p> <p>② <u>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는 시 보건소 및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매 선별검사·치매 진단 및 감별검사(이하 “치매 검진”이라 한다), 치매 치료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u></p> <p>③ <u>시장은 제2항에 따른 치매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실시기간, 실시장소, 검진기관과 대상자의 범위 등을 정하여 실시예정일 14일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u></p>	<p>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u>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남원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② <u>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p>1. <u>치매의 예방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u></p> <p>2. <u>치매 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u></p> <p>3. <u>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u></p> <p>4. <u>치매에 관한 홍보·교육</u></p> <p>5. <u>치매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u></p> <p>6. <u>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u></p> <p>7. <u>그 밖의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u></p>

현행	개정안
<p>제4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치매 검진과 치매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치매 검진비용 지원은 협약된 전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제4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치매환자 및 그 가족</li> <li>2.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li> <li>3. 치매관리사업 홍보, 캠페인, 교육 및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사람 및 자원봉사자와 단체</li> <li>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단체</li> </ol>
<p>제5조(지원 절차) ① 제3조에 따라 치매 검진을 한 전문 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5조(지원 내용)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② 개인이 치매 치료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를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치매검진사업,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검사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p>
<p>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합한 경우 청구서 및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2. 치매환자의 치료에 따른 비용 중 본인부담금</p> <p>3. 치매 전 단계의 인지강화 및 생활안전에 필요한 물품</p> <p>4. 지역사회 치매예방, 인식개선 및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p> <p>5. 치매환자 건강관리 및 실종 예방을 위한 물품</p> <p>6.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비용</p> <p>7.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비용</p> <p>8.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교육 및 홍보 비용</p> <p>9. 치매관리사업 홍보, 캠페인, 교육 및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대상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물품, 기념품, 상품권, 간식 등 구입 비용</p> <p>10.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현 행	개 정 안
<p>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 한 방법으로 <u>치매치료비용</u>을 지원받은 사람에게 이미 지급된 <u>지원금을 되돌려 받을 수</u> 있다.</p>	<p>제6조(환수조치) ----- -----<u>치매관리사업 비용</u>----- ----- <u>비용을 환수할</u> -----.</p>
<p>&lt;신 설&gt;</p>	<p>제8조(이용 제한) 시장은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u>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3호에 <u>따른 감염병환자</u></li> <li>2. 센터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u>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u></li> <li>3. 센터 이용에 <u>따른 질서를 지키지 않은 치매환자</u></li> <li>4.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이용을 <u>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u></li> </ol>
<p>&lt;신 설&gt;</p>	<p>제9조(포상) ① 시장은 <u>치매관리사업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관·법인·단체·시설</u> 등에 「<u>남원시 포상 조례</u>」에 따라</p>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8조(시행규칙) (생략)</u></p>	<p><u>포상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념품, 상품권,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u></p> <p><u>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u></p> <p><u>제11조(시행규칙) (현행 제8조와 같음)</u></p>

**남원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붙임 1

## 관련법령

## □ 치매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6. 12., 2020. 12. 29.>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 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 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4.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제16조의 중앙치매센터
  - 나. 제16조의2의 광역치매센터
  - 다. 제16조의3의 공립요양병원
  - 라. 제16조의4의 치매안심병원
  - 마. 제17조의 치매안심센터
  - 바. 제3조제1항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 28.>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치매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치매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치매검진사업

2.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3.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4.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5. 치매등록통계사업
  6. 제13조의2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7.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8.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9. 그 밖에 치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2. 29.>

**제18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수행에 드는 비용
  - 1의2.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 1의3. 제17조의2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